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90

발의연월일: 2021. 9. 15.

발 의 자:배준영・안병길・金炳旭

박덕흠 • 정찬민 • 송석준

양금희 • 이 용 • 박성민

이주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바다로 유입되거나 바다에서 조업 중에 발생하는 해양폐기물로 인해 인천광역시 옹진 군과 같이 바다와 도서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운반을 위한 선박 운영의 필요성이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의 건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①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
	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의 건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